

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4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4월 6일

3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(행정자치부)에 의거 충청

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

○ 기 구성된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○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 심의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(제12조제7항)

○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"안전관리과장"에서 "재해방재담당사무관"으로 함(제15조제4항)

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1호

### 5. 검토의견

사 도 보 고 습

-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비 차원에서 별도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
-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실무담당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